# 제841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1 |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<br>(해양수산부) | 1.면허어업 및 양식업 종사 어선에 대한 「어선안전조업법」 기준 처분 신설(신설)<br>- 면허어업 및 면허양식업에 대하여 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10조에 따른 출항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경고(1차, 2차 위반) 및 면허 취소(3차 위반)하는 행정처분 기준 신설<br>▶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<br><br>2.구획어업 위반행위 행정처분 강화(강화)<br>- 정치성 구획어업이 허가구역을 벗어나 어구를 부설할 경우 위반차수별 어업정지 기간을 확대하고, 해기사 면허 정지 처분기준 신설<br>▶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| 1.비중요<br>2.비중요 |
| 2 |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<br>(식품의약품안전처) | 1.행정처분 기준(신설)<br>- 의료기기 보험가입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*을 설정<br>* (1차) 경고, (2차) 판매업무 정지 3개월, (3차) 판매업무 정지 6개월, (4차) 판매업무 금지<br>▶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| 1.비중요 |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3 | 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<br>(환경부) | 1.태양광 패널의 재활용단위비용 및 회수단위비용 신설(신설)<br>-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단위비용 및 회수단위비용 신설<br>* 재활용부과금 단위비용은 kg당 727원, 회수부과금 단위비용은 kg당 94원<br>▶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,제20조 | 1.비중요 |
| 4 | 2021년 7월 ~ 2022년 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개정안<br>(해양수산부) | 1.2021년 7월 ~ 2022년 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 개정고시(안)(신설)<br>- 11개 어종, 15개 업종에 대해 총허용어획량 설정<br>▶2021년 7월 ~ 2022년 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제2조 | 1.비중요 |
| 5 |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<br>(해양수산부) | 1.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및 처리기준과 이행명령(신설)<br>-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및 위반 시 이행명령 조치, 분리배출 기준·절차 및 처리업자 준수사항 신설<br>▶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, 제7조제8조제11조<br><br>2.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시설, 장비 및 인력기준과 행정처분 기준(신설)<br>-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시설·장비·인력기준 및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<br>▶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,제12조 | 1.비중요<br>2.비중요 |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6 |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<br>(산업통상자원부) | 1.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강화(강화)<br>-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가중·감경 처분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일반기준 신설<br>-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연탄의 원료가 되는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, 해당 석탄이 품질기준에 미달시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 신설<br>▶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3조<br><br>2.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품질분석시험시설의 설치기준 강화(강화)<br>-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아 연탄의 원료로 사용하는 연탄제조업자에게 석탄가공업 품질분석시험시설 외에 석탄광업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의무 부과<br>▶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 | 1.비중요<br>2.비중요 |
| 7 |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개정안<br>(식품의약품안전처) | 1.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반기보고 대상신설(신설)<br>-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반기보고 대상* 신설<br>* ① 실리콘겔인공유방, ② 인공엉덩이관절(관절 접촉면이 모두 금속 재질인 경우에 한한다.)<br>▶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제3조 | 1.비중요 |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8 | 택배 지·간선 기사 및 유통배송 기사의 적용기준 제정안<br>(고용노동부) | 1.유통배송기사 등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(신설)<br>- 서면으로 1년 이상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소득 중 과반 이상의 소득을 하나의 사업주로부터 얻는 경우 유통배송기사, 택배지·간선기사와 그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가입하여야 함<br>▶택배 지·간선 기사 및 유통배송 기사의 적용기준 제1조 | 1.비중요 |
| 9 |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<br>(고용노동부) | 1.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방법(신설)<br>-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할 때 가입자와 동일한 내용 및 방법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주요정보를 제공하여야 함<br>▶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 | 1.비중요 |
| 10 |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<br>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| 1.대기업 공사업자 기준 및 수주 가능한 공사금액 하한(신설)<br>-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공발주 공사금액의 하한(10억원) 신설<br>▶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 | 1.비중요 |
| 11 |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<br>(고용노동부) | 1.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(신설)<br>-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 갖추어야 하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,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와 그 제공 방법, 승인취소 사유 및 금지행위를 규정<br>▶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2,제13조의4 제13조의6제34조 | 1.비중요<br>2.비중요 |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| | 2.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관련 자료제출(신설)<br>-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소기업·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혜택 제공 의무 부과<br>-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 기준,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, 적립금 운용손익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부과<br>▶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 | |
| 12 |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<br>(문화체육관광부) | 1.인명·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(신설)<br>- 중대한 사고의 구체적 범위 규정*<br>* 사망한 사람이 있는 사고,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사고 등<br>▶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6 | 1.중요 |